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88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3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사유 중 집행유예 선고 명확화	6
※ 참고자료	11
1.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제도 현황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6. 1. 16.
3. 회 부 일: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육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19헌바118).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생략) <신설>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7조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육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¹⁾의 중·소기업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일반근로자 산재보험과 달리 예술인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여야 하므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²⁾에 따라 예술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음³⁾.

한편, 체육은 부상 등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높은 분야이나, 예술인과 달리 현재 체육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육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53.6%의 선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및 재해 발생 시 52.4%가 전액 개인 비용으로 처리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⑧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②~④ (생략)

2)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제도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4) 개인상해보험 포함

이에 개정안은 체육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상황에서도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가 아닌 체육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⁶⁾ 등에서 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가. 개정안 요지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6 –

다. 검토사항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조제4호⁷⁾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다만, 보충의견을 통해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음.

7)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8)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2019헌바171(병합), 2019헌바1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의 재지정 사유⁹⁾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 ①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 ② 「국가공무원법」, 「관세사법」 등 실형·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정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만 체육유공자의 재지정을 할 수 있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②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체육유공자의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형의

9) 「체육인 복지법」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자, 특별사면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¹⁰⁾,

유사 입법례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 문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u>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8. (생략)	
「관세사법」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374

「결격사유 관련 형사처벌 용어 정리」

법문 표현	의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형법」 제76조 제1항)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	형의 시효가 완성된 자(「형법」 제77조), 특별사면(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받은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형이 실효된 자”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상실(전과사실의 말소)된 자(「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7. (생략)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② (생략) ③ ----- -----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u>	1.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u>	1.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u>
2. (생략)	2. (생략)	2. (생략)

문의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제도 현황

-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예술인은 중소기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12년~/보험료 전액 예술인 부담)
- (가입절차) 예술인 개인이 희망하는 보험등급(1~12등급)을 선택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대행*을 통해 가입(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도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 사무업무(가입, 정보변경 등) 지원 중

<2026년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구분	월 보험료		구분	월 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일부 기획직군		창작/실연/기술지원	일부 기획직군
1등급	16,570원	21,590원	7등급	36,910원	48,090원
2등급	19,960원	26,010원	8등급	40,300원	52,510원
3등급	23,350원	30,430원	9등급	43,690원	56,930원
4등급	26,740원	34,840원	10등급	47,080원	61,340원
5등급	30,130원	39,260원	11등급	50,470원	65,760원
6등급	33,520원	43,680원	12등급	53,860원	70,180원

- (가입혜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 (지원) 기존가입 활성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50%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보험사무 대행, ▲산재청구 전문가 연계 상담 지원 등

※ 관련통계

▶ 가입·지원 실적 : 유효가입 4,858명, 누적 15,155명('25.12월, 복지재단 사무대행 기준)
(단위: 명, 원)

구분	유효 가입자수	누적 가입	보험료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2년	5,836	10,890	5,002	372,892,440
2023년	5,188	12,521	4,508	475,850,040
2024년	4,892	13,792	4,239	453,443,390
2025년	4,858	15,155	4,251	501,382,940

▶ 산재 승인 및 급여 지급 현황(노동부 제공)

구분	산재 승인율				보험급여	
	전체(%)	예술인			수급자 수 (명)	지급액 (백만원)
		신청(명)	승인청(명)	승인률(%)		
2021년	90.6	98	93	94.9	184	2,273
2022년	90.1	126	116	92.1	219	1,899
2023년	89.0	150	143	95.3	228	2,546
2024년	87.4	205	187	91.2	275	2,544